

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

1. 주식매수청구권이란

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안전(회사의 합병)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기준일인 2016년 10월 25일 현재 당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,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.

2.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

1) 안전(회사의 합병)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

"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"(붙임양식)를 작성하여

■ **명부주주**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당 회사에

■ **실질주주**(증권회사에 거래주주)는 주주총회일 2영업일전까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.

2) 주식매수청구권 행사

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합병이 승인된 경우에는 "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"를 제출한 주주에 한하여 "주식매수청구서"(붙임양식)를 작성하여

■ **명부주주**는 소유주권을 첨부하여 매수청구 종료일(2016년 12월 12일)까지 당 회사에 제출

■ **실질주주**는 매수청구종료일 2영업일전(2016년 12월 08일)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
3.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

-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주식매수가격은 보통주 1주당 1,380원입니다.

- 주식매수대금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(2016년 12월 12일)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(2016년 12월 26일)이며, 지급장소는

■ **명부주주**는 당 회사 자금담당 부서이며,

■ **실질주주**는 거래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지급합니다.

4. 기타

- 매수청구의 취소는 주식매수청구 종료일까지 가능합니다.

- 실질주주의 경우는 거래증권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"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" 및 "주식매수청구서" 제출시한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명부주주는 ""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" 및 "주식매수청구서"(주권포함) 제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어반벤처빌딩 12층 하이셀(주) 전략기획실

전화번호 : 02-2017-7993 팩스번호 : 02-6203-6060

2016년 11월 23일

하이셀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상준(인)